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7
----------	------

2021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성흠제 의원(찬성자 10명)
- 나. 발의일자 : 2021년 2월 16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 라. 상정결과 :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4월 30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성흠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에 따라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의 면제)에 따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자에 포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토록 함(안 제5조제1항제11호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0. (생략)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 ----- ----- ----- --.
<u><신 설></u>	1. ~ 10. (현행과 같음)
<u>11.</u>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u>11.</u>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② ~ ③ (생략)	<u>12.</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서울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병무청훈련 제1156호)」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서울시 거주 예우대상자를 서울시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201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82조1)에 따라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2)에 따르면, 병무청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우대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이에 2004년부터 3代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고자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는 전국 병역명문가 7,631 가문의 18.7%인 1,427 가문이 있으며, 2021년 기준 지원대상자는 7,125명임.

1)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2)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병무청별 병역명문가 선정현황>

('04년~'21년 누계, 단위 : 가문,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가문수	7,631	1,427	604	897	906	322	569	503	479	214	467	169	400	495	179
%	100	18.7	7.9	11.8	11.9	4.2	7.5	6.6	6.3	2.8	6.1	2.2	5.2	6.5	2.3
병역 이행자	38,665	7,125	3,108	4,609	4,535	1,652	2,926	2,445	2,541	1,108	2,421	917	1,995	2,430	853

출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소개 및 주요 성과(병무청, 2021.3.31. 기준)

또한 병무청홈페이지에 따르면, 12개 타시도 44개 기념관/박물관에서 관람료를 면제 및 할인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은 서대문구의 각 조례에 따라 서대문자연사박물관³⁾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⁴⁾의 관람료가 면제되고 있음(붙임2).

-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안 제5조제1항제11호 신설은 타당하나 실제로는 무료로 운영되므로 현실적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3) 「서울특별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의안번호
2257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성흠제	2021.4.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의 내용을 신설함. (안 제5조제1항제11호 신설)		
추진경과	○ 2021.4.2일 조례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21.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조례 시행		
담당부서	박물관과	팀장	김지혜(☎2133-4183)
		담당	조서영(☎-4185)

붙임 2.

명문가 우대 기념관/박물관 전국 리스트

연번	지자체	면제	할인
1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2	부산	-	국립부산국악원
3	대구경북	대가야박물관	-
4	인천경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
		과천시 추사박물관	-
		백남준아트센터	-
		한국만화박물관	-
5	대전충남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독립기념관
6	강원	애니메이션박물관	-
		양구 국토정중앙천문대	-
		양구 박수근미술관	-
		양구통일관	-
		홍천군 홍천생명건강과학관	-
7	충북	진천 종박물관	-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
8	전북	고창고인돌박물관	-
		무주곤충박물관	-
		반디별천문과학관	-
		익산보석박물관	-
		전주자연생태박물관	-
9	경남	거제박물관	-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
		남해군 나비생태관	-
		남해군 원예예술촌	-
		대산미술관	-
		미리별민속박물관	-
		통영옷칠미술관	-
		항공우주박물관	-
		해금강테마박물관	-
해인사성보박물관	-		
10	제주	감귤박물관	건강과성박물관
		기당미술관	방림원
		서귀포시립이중섭미술관	아프리카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유리의성
		해녀박물관	조안베어뮤지엄
		-	테지움사파리
11	경기북부	국립수목원	나인포레스트 이화원
		양주시 회암사지박물관	백영수 미술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
		임진강 독개다리 및 BEAT 131	-
12	강원영동	강릉오죽헌	-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함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5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16일
발 의 자 : 성함제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재형, 김제리,
문장길, 이상훈, 임종국,
전석기, 최 선, 최응식,
황규복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에 따라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의 면제)에 따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자에 포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토록 함. (안 제5조제1항제11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의 호 번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10.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11.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p> <p>② ~ ③ (생략)</p>	<p>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p> <p>12.-----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1012900000030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성흠제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민향식 팀장
노이안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1.29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10-2326-1900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예산분석팀장 민향식

분석관(주무관) 노이안

☎ 010-2326-1900

e-mail : 78901@seoul.go.kr